



해외투자자과 인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5월 16-17일 스웨덴의 룬트(Lund)에서는 '인권과 경제관계'에 관한 제5차 ASEM 비공식 세미나가 열렸다.

ASEM 비공식 세미나는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공식·비공식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다방면에 걸쳐 열리고 있다. 이번의 세미나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자과 인권에 관해 2002년 9월 동경, 그리고 2003년 2월 방콕의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진척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스웨덴 정부가 비공식 논의의 장을 다시 마련하여 열리게 된 것이다.

금번 회의에는 동경, 방콕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제법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해외투자기업 관계자, 노조 관계자, 정부관료 등이 모여 토론을 전개하였다.

개도국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 외에도 노동기준과 인권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연계하여 WTO 내에서 논의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약이나 법제와 같은 hard law 외에 권위 있는 기구나 조직에 의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soft law가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국의 '해외진출기업 부당행위 제재법(Alien Torts Claims Act)'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다국적기업에는 이러한 법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경고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해외직접투자(FDI)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노동기준의 악화를 수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아예 수출자유지역이나 경제특구를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중남미,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기준 침해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국제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인권 혹은 노동기준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세기 말 국제법 발달 시기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베르사이유 조약의 결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1919년에 탄생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다수의 OECD국가에서 실업 혹은 임금불평등이 증대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새로이 국제적 논의의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98년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전환점으로 하여 WTO와 같은 다자적 틀 내에서 제재적 성격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그동안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해 오던 국가들은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지역무역 협정 및 쌍무적 협정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ASEM 비공식 세미나와 같은 장에서 공론화하고 여론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자유무역 협정이나 투자 협정에 노동기준 관련조항이 삽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독립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부당행위 제재법(Alien Torts Claims Act)’과 같은 아이디어가 선진국 내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규범이 실현된다는 것은 예컨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으로도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번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공론화 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